

# 亞太 국가의 서비스 교역에 대한 일반협정(GATS) 약속 이행일정 조사 보고서

☞ 본고는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 U.S. International Trade Commission)가 1997년 8월 미국의 아태지역 교역국들이 제출한 서비스교역에 대한 일반협정(GATS, General Agreement on Trade in Services) 이행약속에 대한 조사보고서를 발간(ITC가 USTR요청에 의거 조사실시)한 것을 번역 요약한 것임.

ITC는 10개국(호주, 홍콩, 인도, 한국, 말레이지아, 뉴질랜드,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을 각각 국가별로 아래의 업종에 대한 이행약속을 조사하였다.

- 유통서비스(도소매, 프랜차이징서비스)
- 교육서비스
- 통신서비스(고도 정보통신서비스, Courier서비스, Audiovisual 서비스)
- 건강관리서비스
- 전문서비스(회계, 광고 및 법률서비스)
- 건축/엔지니어링 및 건설서비스
- 육로수송서비스(철도 및 Trucking 서비스)
- 여행 및 관광서비스

조사보고서에 따르면, 아태 10개국이 1995년 미국의 서비스교역의 16%를 차지했고 1995년 가장 큰 수출시장은 한국, 호주, 싱가포르 및 홍콩이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아태 10개국이 제출한 이행약

속 일정은 이행수준과 투명성의 측면에서 보아 서로 차이가 있으며, 완전자유화 조치가 거의 없는 전반적인 유보입장을 취하고 있다. 그 결과 미국의 서비스 제공업체들에게 직접적인 혜택을 주지 못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태교역국들이 제출한 이행 일정은, 구속력 있게 이행수준을 설정하고 투명성을 높였으며 향후 서비스교역 자유화에 대한 굳은 약속을 하였다는 점에서, 완전자유화를 이룩하는데 크게 도움이 될 것이다.

전자정보산업과 관련된 부분은 고도 정보통신서비스로 이에 대한 조사보고서의 요약은 다음과 같다.

## 1. 정 의

고도 정보통신서비스는 기본적 음성 및 데이터 신호를 통신네트워크를 통한 전송에 가치를 부여하는

다양한 서비스를 의미한다. 즉, GATS에 정의된 대로, 전자메일, 음성메일, 온라인 정보 및 데이터베이스 검색, EDI(Electronic Data Interchange), 첨단/부가가치 팩시밀리 서비스(저장 및 전송, 저장 및 검색을 포함하는), 코드 및 프로토콜 커버전 및 온라인 정보와/혹은 데이터 프로세싱(거래 프로세싱을 포함하는) 등이다.

## 2. 고도 정보통신서비스의 국제교역

부가가치 서비스라고도 불리우는 고도 정보통신서비스는 공공 및 사기업의 통신네트워크를 통해 외국의 소비자들에게 제공된다. 부가가치 통신망 사업자는 다수의 정보통신망 사업자들로부터 라인을 임대하여 사유화된 네트워크를 개발한다. 임대된 라인은 두개 지점의 영구적 링크를 제공하거나, 때로 개종 사용자그룹이라 불리우는 광역 사기업 네트워크의 일부로 채택되거나 혹은 공공 네트워크에 링크되어 국제적 가상 사기업 네트워크를 형성할 수 있다.

사용자들은 고도 정보통신서비스에 접속하여 여러 방법으로 전자메일이나 EDI같은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다. 대개의 경우 고객은 PC에서 직접ダイ얼하여 로컬이나 고도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업체들이 제공한 세금없는 번호를 사용하는 네트워크에 연결한다.

로컬 접속이 가능치 않을 경우, 사용자는 공공 데이터 네트워크에 연결하기 위해, 로컬 전화 네트워크를 통해 ISDN(Integrated Services Digital Network)을 사용하는, DDD를 통해 네트워크에 접근할 수 있다. 이러한 서비스의 설비는 복잡하며 단일 메세지가 몇개국의 국경을 넘어 전송될 수도 있다. 고도 정보통신서비스의 세계적인 유력업체로는 : IBM Global Network, AT&T and Partners, GE Information Services, Sprint International and Partners, SITA(Societe Internationale de Telecommunication Aeronautiques, 유럽의 컨소시움), Concert(영국), Infonet(유럽의 컨소시움) 및 Cable & Wireless Business Networks(영국) 등이 있다. 아시아에서는 NTT(일본), KDD(일본), DGT Taiwan 및 DACOM(한국) 등이 있다.

1996년 세계시장 주요 비아시아 고도 정보통신서비스 공급업체 현황

VAN공급업자	국가	세계시장 점유율	아시아시장 점유율	세계고도정보통신서비스수입
IBM Global Network(IBM GN)	미국	9.8%	3.6%	1,920백만불
AT&T and partners(ATT)	미국	6.1%	4.3%	1,190백만불
GE Information Services(GEIS)	미국	4.8%	3.8%	937백만불
Global One(Sprint)	미국	4.7%	1.7%	922백만불
SITA	Airline 컨소시움	3.9%	2.4%	760백만불
Concert(BT/MCI)	영국	3.7%	2.3%	730백만불
Infonet	Carrier 컨소시움	1.7%	1.0%	340백만불
Cable & Wireless Business Networks (CWBN)	영국	1.6%	2.0%	300백만불

1. 아시아시장 점유율은 일본과 중국을 포함한 것임

2. Infonet의 주식배분 : Deutsche Telekom(23.3%), Transpac(23.3%), Telstra(7.6%), Belgacom(7.7%), Swiss PTT(7.7%) Telefonica(7.7%), Telia International(7.7%), KDD(7.2%)

source : Michael Galbraith, Marta Kindya, Courtney Munroe, et al., Global VANS markets : 1995 Edition(New York McGraw-Hill, 1996).

국제 VAN(value-added network) 서비스 공급업체들은 1994년 전세계적으로 14.5억불의 수입을 올렸다. 이들중 8개업체가 1996년 전세계의 고도 정보통신서비스 수입의 35%를 차지하였다. 이들 8개업체는 1994년 4.1억불의 아태지역 고도 정보통신서비스 시장의 5분의 1을 차지하였다. NTT 및 KDD 같은 아시아의 정보통신망 공급업체들이 나머지 5분의 4를 차지하였다. 다국적 기업 및 대기업 사용자들이 주요 고객들이며 세계 VAN서비스 산업

을 떠받쳐 주고 있어 고도 정보통신서비스망 제공업체들의 수입의 큰 부분에 기여하고 있다.

아태지역의 고도 정보통신서비스의 설비는 이 지역이 점차 자유화됨에 따라 세계에서 가장 빨리 성장하고 있다. 아시아에서는 온라인 서비스 및 EDI 가 가장 큰 수입을 창출해내는 분야이다. 인터넷 접근과 관련된 수입은 비교적 적을 것으로 보이나 Sprint는 예외로 보도에 의하면 아태지역 인터넷 시장의 85%를 차지하고 있다.

1996년 아시아시장 주요 아시아 고도 정보통신서비스 공급업체 현황

VAN공급업체	국가	아시아시장 점유율	세계고도정보통신서비스수입
NTT	일본	23.6%	1,300백만불
KDD	일본	4.7%	260백만불
DGT Taiwan	대만	2.2%	121백만불
DACOM	한국	6.2%	340백만불
Hong Kong Telecom	홍콩	2.7%	147백만불
Japanese Type II Carriers	일본	14.8%	811백만불
Korea Telecom	한국	3.0%	168백만불
Singapore Telecom	싱가폴	1.8%	96백만불
Telestra	호주	7.5%	412백만불
기타업체		12.5%	688백만불

1. 아시아시장 점유율은 일본과 중국을 포함한 것임
  2. Japanese Type II Carriers는 다음의 업체들로 구성되어 있다 : Nippon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NI+C), Information Services Intemarional-Dentsu(ISI-D), AT&T Japan Enhanced Network Services(AT&T JENS), NEC, NIFTY, Recruit, Nomura Research Institute (NRI), Network Information Services(NIS), Japan Research Institute
- source : Michael Galbraith, Marta Kindya, Courtney Munroe, et al., Global VANS markets : 1995 Edition(New York McGraw-Hill, 1996).

### 3. 고도 정보통신서비스에 대한 약속이행 조사

고도 정보통신서비스 공급업체들은 국경을 초월하거나 외국의 상업적 존재를 통해 외국의 소비자들에게 공급한다. 이러한 공급채널의 주요 장애는 한정적 면허조치, 특정서비스 설비에 대한 명백한 금지, 외국인의 소유권 및 조인트 벤처의 참여 제한, 임대 정보통신망에 대한 차별적 시장접근 및 무비용 가격정책 및 저개발되어 신뢰기 어려운 정보통신 인프라로 인한 기술적 어려움 등이다. 규제적 제한조치는 아태경제권에서 각국에 따라 매우 다양한데 이는 이 지역이 세계 정보통신시장에서 가장 개방되었기도

하고 동시에 가장 제한적이기도 하다.

미국의 10개의 아태교역국이 고도 정보통신서비스 약속이행 일정을 제출했는데, 호주와 한국이 가장 개방적인 환경을 조성했고 뉴질랜드가 바로 뒤를 잇고 있다. 가장 제한을 받고 있는 고도 정보통신서비스 분야는 Electronic Data Interchange, Enhanced Facsimile 및 Code and Protocol Conversion 등이다.

#### 〈한국〉

한국은 월경공급(Cross-Board Supply), 해외소비(Consumption Abroad) 및 상업적 존재(Commer-

cial Presence)에 대해 외국의 공급업자들에게 완전한 시장접근과 내국인대우를 약속한다. 등록된 고도 정보통신서비스 공급업체는, 비록 기타 업체들과 같이 공공 정보통신 네트워크로 부터 임대한 라인을 통해서지만, 기초적 데이터전송 서비스도 제공 할 수 있다. 또한 상업적 존재의 설립에 대해서는 시장 접근과 내국인대우 모두 한국 주식의 취득을 제한하는 전산업(Cross-Industry)의 이행약속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외국의 포트폴리오 투자는 한국증권 거래소에 기재된 상장된 제한되고, 개별 외국투자는 기업의 전체 주식의 3% 한도내에서만 가능하다.

또한 단일 기업에 대한 전체 외국인투자가 10%를 초과할 수 없다. 게다가 외국의 자회사들은 한국의 외환관리법의 규정에 부합하여야만 한다. 내국인 대우 제한과 관련, 한국의 전산업 이행약속에 따르면 외국기업은 최소 5,000만원 이상을 투자하여야 한다. 토지취득에 관한 조치는, 비록 외국인 토지법에 의해 승인받은 외국회사들이 용역을 공급하고 간부사원들의 주택을 제공할 수 있지만, 구속력이 없게 남겨졌다. 게다가 한국은 “관련법에 따라 설립된” 기업에 대한 세금혜택이 제한될 수 있다는 의사 를 표명했다.

자연인의 존재에 대한 조치는 중역, 간부 및 전문가의 입국과 임시체류에 대한 전산업 이행약속에 나타난 조치를 제외하면 구속력이 없는 상태로 남아있다. 이러한 사람들은 최대 3년 체류로 제한되어 있고, 필요하다고 여겨지는 경우 특정기간 연장할 수 있다. 특정 건설턴트들은 90일 체류로 제한되어 있다.

#### 4. 미국업계의 의견

미국업계는 대부분의 해당국가의 시장상황에 대해 전반적인 만족과, 장래의 기본적 정보통신서비스(예. 음성 및 데이터 전송) 뿐만 아니라 고도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의 전망에 대해서도 약관을 표명한다. 일반적으로 미국의 정보통신서비스 공급업체는 아태지역을 기업의 확장에 가장 중요한 시장으로 여

긴다. 낙관은 향후 5년간 아태지역의 정보통신분야에 300억불의 투자전망에 근거한다.

한국의 고도 정보통신서비스 분야는 보도에 의하면 경쟁에 개방되어 있고 100% 외국인 소유를 허용하고 있다. 고도 정보통신 공급업체는 공공 네트워크에서 임대한 라인을 통해서만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제한되어 있다. 외국의 초고속 서비스 공급업체는 한국정부의 지침에 따라 직접 한국의 정보통신망 사업자들과 연결(Interconnection) 비용을 협상할 수 있다. 현재 외국 서비스 공급업체는 자신의 서비스를 구축하여 운영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고, 서비스에 근거하는 Carriers에 대한 전체 외국인투자는 33%로 제한되어 있다. 그러나 최근 종결된 WTO 기본 정보통신협정에 따라 한국은, 임대한 라인을 통해 음성 서비스를 공급하는 기업의 외국인 지분을 2001년 1월 1일까지 49%를 이후 100% 지분을 허용하는 이행약속의 일정을 마련했다.

#### 5. 요약

각국의 이행일정과 정부관리 및 업계대표들과의 인터뷰에 비추어 봤을때, 호주, 뉴질랜드, 싱가폴 및 홍콩의 시장이 고도 정보통신서비스 부문에서 가장 개방되어있다. 그러나 싱가폴과 홍콩이 제출한 이행약속은 호주와 뉴질랜드처럼 포괄적이지는 못하다. 해당 10개국 중에서 홍콩을 제외한 나머지 국가들이 외국의 고도 정보통신서비스 공급업체에 월경(cross-border) 베이스로 시장접근 및 내국인대우를 허용하는 최소한의 부분적 이행약속을 제출했다. 호주, 홍콩 및 한국은 상업적 존재를 통한 부가서비스 서비스에 대한 완전한 이행약속을 제출했으나 한국의 이행약속은 전산업 조치에 의해 약간 약화 될 수 있다. 각국의 이행일정은 투명성의 강화와 효율적인 기준 마련의 측면에서 많은 것을 성취한 것으로 궁극적으로 미국업계의 혜택을 줄 것이다. 또한, 대부분의 해당국가가 시장에너지(Market Forces)로 인해 자유화되고 있어 현재의 시장상황은 각국의 이행 일정에서 나타난 것보다 더욱 개방적이다.